

# 물 품 구 매 규 정

(제정 2000. 3. 2.)

(제명변경 및 전부개정 2023. 7. 1)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“구매”란 물품구매 계약, 물품제조 계약, 단가 계약 등을 말한다.
- “물품”이란 원자재, 제작품, 가공품, 소모품, 도서, 차량 등 내·외자로 구입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.
- “제조”란 인쇄물 제작, 도면, 사양서 등에 따른 비기성품의 제작을 말한다.
- “추정가격”이란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정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.
- “예정가격”이란 구매를 위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·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한다.
- “자체 구매”란 구매 부서를 통하지 않고 수요 부서에서 직접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각 처, 실(팀), 대학, 대학원,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등의 모든 물품구매 전반에 적용한다.

**제4조(담당부서)** 물품구매 업무는 총무지원실에서 수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 부서에서 자체 구매를 할 수 있으며, 구매 절차 및 방법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단가계약이 체결된 비자산성 물품
- 추정가격이 300만원 이하의 비자산성 물품 <개정 2023.9.27.>
- 박물관에서 구매하는 박물류
- 경품, 상품권

## 제2장 물품의 구매 절차

**제5조(구매요청)** ①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 부서에서 배정된 예산의 가용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물품매입품의서를 작성(규격서, 카탈로그, 도면, 견본 및 참고자료 첨부)하여 구매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산성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매입품의서를 구매 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이나 업무계획이 확정된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구매수량 또는 물량 등을 분할하여 구매(요청) 할 수 없다.

③ 입찰공고 기간 등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구매방법)** 구매 부서에서는 그 규모에 따라 적절한 구매방법(경쟁입찰, 수의계약, 단가계약 등)을 검토한 후 구매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물가조사 및 가격사정)** 가격사정은 물가조사를 기초로 하여 본교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한다.

- 물가조사
  - 직접조사방법: 직접 시장가격 조사
  - 간접조사방법

- (1) 가격표, 카탈로그에 의한 조사
  - (2) 공인기관 발행 월보에 의한 조사
  - (3) 거래 실적 가격
2. 원가 계산: 구매부서에서 긴급품목, 희귀품목,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첨부가 불가능하거나 타 방법에 의하여 물가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가계산서 및 물가표를 첨부하여 견적서를 대신할 수 있다.

**제8조(물품검수)** ① 납품된 물품은 「물품검수 규정」에 따라 검수 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.

- ②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작과정 중에도 중간검수를 행할 수 있다.

**제9조(대가의 지급)** 물품의 검수 및 등재가 완료되면 구매 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9.27.>

**제10조(선급금)**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」 제3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이나, 계약의 특성상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 업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(물품제조 계약에만 해당)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3장 계약의 방법

**제11조(경쟁입찰)** 추정가격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계약의 목적, 성질,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붙일 수 있다.

**제12조(수의계약)** ① 경쟁입찰에 의해 구매되어야 할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,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혹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에 규정된 경우 그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- ② 추정가격이 2,000만원 이하일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다만,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- ③ 추정가격 100만원 이하의 소액 구매는 1인 견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- ④ 견적서는 업체로부터 팩스 또는 전자메일,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.

- ⑤ 견적서 제출 공고 기간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3일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**제13조(단가계약)** 구매 부서는 반복 구매 품목의 수시구매에 있어 신속, 가격 안정, 품목의 단일화 및 업무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### 제4장 입찰

**제14조(입찰공고)** ①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본교 홈페이지, 나라장터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

- ②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또는 물품 규격 설명일 전일부터 가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
- ③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 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물품규격 설명회)**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물품에 대한 설명과 입찰 방법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품규격 설명회를 할 수 있다.

- ② 물품규격 설명회는 수요 부서 또는 구매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며 물품규격 설명회의 조서는 참가자의 기

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물품규격 설명회를 실시한 경우 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입찰참가 신청)**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1. 입찰참가신청서
2. 사업자등록증
3. 인감증명서
4. 사용인감계
5. 이행(입찰)보증보험증권
6. 납세완납증명서
7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서류

②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유의서, 계약 일반조건, 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입찰보증금)**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(단가 계약의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)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입찰서의 제출 및 입찰의 무효)** ① 경쟁입찰 참가자는 소정 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밀봉한 상태로 접수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개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교환·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.

④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4조의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.

**제19조(예정가격)** ① 예정가격은 총무처장이 경쟁입찰에 붙일 물품의 가격을 해당 사항에 관한 규격서,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,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이를 사전에 개찰 장소에 두어야 하며,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예정가격의 결정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.

**제20조(개찰 및 낙찰자 결정)** ① 입찰은 계약담당자 및 수요 부서 담당자와 입찰자 입회하에 실시하며,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.

③ 1회 투찰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3회까지 재투찰을 실시하며 그때까지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교 예정가격과 가장 근접한 입찰자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.

④ 제3항에 의한 협상으로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이 규정 제21조에 따른다.

**제21조(재공고 입찰)** 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할 수 있다.

②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.

③ 재공고 입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## 제5장 계약의 체결

**제22조(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)** ①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9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계약의 목적
2. 계약금액
3. 이행기간
4. 계약보증금
5. 지체상금
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.

③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9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물품의 특성이나 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계약보증금)**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.

**제24조(하자보수보증금)** ①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의 현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하자보증기간은 그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제품별 특성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증 책임 기간 중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.

**제25조(지체상금)** 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써 계약금액의 1,000분의 0.7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체일수에 곱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계약대상자가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**제2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**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거나 입찰 또는 계약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본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6조에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27조(준용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」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계약예규」 등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**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명은 다른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23. 9. 27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